|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9 고체폐기물 감별 지도원칙(시행)**  2006년 3월 9일 국가환경보호총국,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해관총서, 질검총국 반포, 2006년 4월 1일 시행  이 지도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에서 정의한 고체폐기물과 비 고체폐기물의 감별에 적용한다. 그러나 그 세관의 상품코드를 확정하는데 적용하지 않는다. 고체폐기물과 비 고체폐기물의 감별은 우선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의 정의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다음은 이 지도원칙의 고체폐기물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위의 정의와 고체폐기물 범위 내에서 여전히 감별하기 어려운 것은 이 지도원칙 제3부분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물질, 물품이나 자재가 고체폐기물 혹은 비 고체폐기물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별 결과에 논쟁이 있는 것은 국가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서 해당 부서와 함께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감별과 판결을 진행한다. 수입 절차에서 수입자가 세관의 수입한 화물을 고체폐기물관리법위에 넣은 데 대해 불만이 있으면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제2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1. 고체폐기물의 정의**  고체폐기물이라 함은 생산, 생활과 기타 활동에서 발생한 원래의 이용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이용가치를 상실하지 않았으나 포기되었거나 버려진 고체, 반고체와 용기 속에 넣은 기체의 물품, 물질 및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서 고체폐기물관리의 물품, 물질에 넣은 것을 말한다.  **2. 고체폐기물의 범위**  2항 1)에 해당되는 물질이나 물품이 2항 2)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고체폐기물이다. 어떠한 물질 혹은 물품이든지 2항 2)에 포함될 경우 고체폐기물에 속하지 않는다.  1)고체폐기물은 아래 물질, 물품과 자재를 포함(그러나 한정되지 않음)한다.  (1) 가정에서 수집한 쓰레기  (2)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 물질, 폐기 제품  (3) 실험실에서 발생한 폐기 물질  (4) 사무실에서 발생한 폐기 물질  (5) 도시오수 처리공장 슬러지, 생활쓰레기 처리공장에서 발생한 찌꺼기  (6) 기타 오염공제시설에서 발생한 쓰레기, 찌꺼기, 슬러지  (7) 도시 수로 준설 슬러지  (8) 표준과 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 계속하여 원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9) 가짜 위조 제품  (10) 소유자 혹은 그 대표가 폐기물이라고 성명한 물질이나 물품  (11) 오염 된 자재(다염화비페닐 PCBs에 의해 오염된 기름)  (12) 법률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모든 자재, 물질 혹은 물품  (13) 국무원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서 고체폐기물이라고 성명한 물질  2) 고체폐기물은 아래 물질이나 물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1) 방사성 폐기물  (2) 저장을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원 생산과정으로 돌아가거나 그 발생한 과정으로 돌아간 물질이나 물품  (3) 그 원래 용도에 사용하는 모든 물질과 물품  (4) 실험실용 샘플  (5) 국무원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서 허가한 기타의 고체폐기물관리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물질이나 물품  **3. 고체폐기물과 비 고체폐기물 평정**  1) 폐기물의 잡업방식과 원인에 근거하여 판단  표 1의 작업방식과 표 2의 원인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하나의 물질, 물품 혹은 자재를 반드시 표 1의 작업방식으로 처리해야 하고 표 2의 한 개 혹은 여러 개 원인을 만족시키는 경우 고체폐기물이라고 판단한다. 표 1과 표 2는 반드시 결합하여 사용해야 하고 단독으로 고체폐기물의 감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표1 작업방식>**   |  |  |  |  | | --- | --- | --- | --- | | **번호** | **저장과 처리작업** | **번호** | **이용 작업** | | D1 | 지하 혹은 지상에 놓아서 처리, 예하면 매립 | R1 | 연료로 사용하지만 직접 소각이 아니거나 기타 방식으로 열 에너지 발생 | | D2 | 토지처리 | R2 | 유기물질의 회수/ 재활용 | | D3 | 심층 주입 | R3 | 금속과 금속화합물의 재순환/ 회수 | | D4 | 지표 저축 | R4 | 기타 무기물질의 재순환/ 회수 | | D5 | 특별 설계한 매립, 예하면 덮개가 있고 서로 분리되며 환경과 차단한 라이닝이 있는 격리 조에 넣는다 | R5 | 산 혹은 알칼리의 재활용 | | D6 | 수역에 배출, 해저 매립 포함 | R6 | 오염제거 물질의 회수에 사용 | | D7 | 소각, 에너지 회수기능이 있으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각과 시멘트 킬른 처리 포함 | R7 | 촉매제 성분의 회수 | | D8 | 영구 저축, 예하면 용기를 광정에 놓는다 | R8 | 사용했던 기름의 재 제련 혹은 기타 방식으로 재 사용 | | D9 | 저축과 처리하기 전에 먼저 혼합, 새로 포장하거나 임시 저축 | R9 | 농업 혹은 생태환경을 개선하는데 유리한 토지처리 | | D10 | 저축 혹은 처리가 필요한 화합물 혹은 혼합물을 발생하는 물리화학, 생물처리 | R10 | 이용 조종에서 발생한 잔여물질의사용 | | D11 | 자연환경 속에 누출될 수 있는 제품의 생산 | R11 | 이용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물질의 교환과 축적 | | D12 |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서 성명하거나 해당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저축혹은 처리 조종의 작업방식 | R12 | 국무원경제종합거시조정부서에서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와함께 성명 혹은 해당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이용 조작으로 하는 작업 방식 |   **<표2 폐기물을 반드시 종합이용, 저장과 처리를 진행해야 하는 폐기물종류>**   |  |  | | --- | --- | | **번호** | **폐기물 종류** | | Q1 | 생산 혹은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잔여물 | | Q2 | 품질표준 혹은 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 | | Q3 | 벌금에 처한 가짜위조 제품 | | Q4 | 기한이 넘은 제품 혹은 화학품 | | Q5 | 유출, 분실 혹은 기타 사고를 겪고 오염을 받은 자재 | | Q6 | 사용 중 오염된 물질 혹은 물품 | | Q7 | 오염 토지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된 물질 혹은 물품 | | Q8 | 고유 기능을 잃은 제품, 예하면 폐 촉매제 | | Q9 | 쓰기 좋지 않은 물질 혹은 물품. 예를 들면 오염된 산, 오염된 용제 | | Q10 | 오염공제시설에서 발생한 쓰레기, 잔여물, 슬러지 | | Q11 | 기계 가공/광택을 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 | | Q12 | 원 자재 가공에서 발생한 찌꺼기 | | Q13 | 국무원 경제종합 거시조정 부서에서 종합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거나 국무원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 국가해당법률법규에서 규정한 반드시 종합이용하거나 처리해야 하는 기타 폐기물류 |   2) 특성과 영향에 근거하여 판단  하나의 물질, 물품 혹은 자재(아래 물질이라고 약칭)가 고체폐기물에 속하는 여부를 평가하려면 아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일반요소 ; 이 물질을 일부러 생산 했는지, 시장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제조 했는지, 경제가치가 마이너스인지, 정상적인 상업순환이나 사용의 일부분인지를 판단  (2) 특성 : 그 물질의 생산에 품질규제가 있는지, 국가 혹은 국제에서 인정한 규범/표준이 있는지를 판단  (3) 환경영향 ; 동일 초급제품 대비 그 물질의 사용이 환경에 해가 없는지, 동일 상응 원 자재 대비 생산과정에서 그 물질의 사용이 인체건강 혹은 환경에 위해를 증가시키는지, 인체건강 혹은 환경에 더욱 큰 위험을 초래하는지, 그 물질이 환경에 해로운 성분을 포함하는지 여부, 또한 이러한 성분이 대체하는 원료 혹은 제품중에 재순환과정에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았거나 재이용되지 않은 경우.  (4) 사용과 귀착점 ; 그 물질 사용 전 추가적인 가공이 필요한지, 직접 생산/상업에서 응용할 수 있는지, 작은 회복으로 투입 사용이 가능한지, 여전히 원래 목적에 적합한지, 기타 용도의 대체물로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생산과정에서 응용할 수 있는지, 고정적인 용도가 있는지, 현존의 형식 혹은 표 1의 작업방식을 거치지 않고 처리한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표 2의 작업방식을 거쳐 처리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판단  하나의 물질이 고체폐기물인지를 평가하는 데는 종합적으로 위의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물품별 평가대상에 따라 중점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도 다르다. 구체적인 판단은 물질의 특성과 영향에 근거하여 감별을 하여야 한다. |  | **固体废物鉴别导则（试行）**  2006年3月9日环保总局、发展改革委、商务部、海关总署、质检总局发布  2006年4月1日施行    本导则适用于《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所定义的固体废物和非固体废物的鉴别，但不适用于确定其海关商品编码。固体废物与非固体废物的鉴别首先应根据《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中的定义进行判断；其次可根据本导则所列的固体废物范围进行判断；根据上述定义和固体废物范围仍难以鉴别的，可根据本导则第三部分进行判断。  对物质、物品或材料是否属于固体废物或非固体废物的判别结果存在争议的，由国家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会同相关部门组织召开专家会议进行鉴别和裁定。在进口环节，进口者对海关将其所进口的货物纳入固体废物管理范围不服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第二十六条的规定，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也可以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    **一、固体废物的定义**  固体废物，是指在生产、生活和其他活动中产生的丧失原有利用价值或者虽未丧失利用价值但被抛弃或者放弃的固态、半固态和置于容器中的气态的物品、物质以及法律、行政法规规定纳入固体废物管理的物品、物质。    **二、固体废物的范围**  列于二（一）中的物质或物品，如果没有包括在二（二）中，是固体废物。任何物质或物品如果包括在二（二）中，则不是固体废物。  （一）固体废物包含（但不限于）下列物质、物品或材料：  （1）从家庭收集的垃圾  （2）生产过程中产生的废弃物质、报废产品  （3）实验室产生的废弃物质  （4）办公产生的废弃物质  （5）城市污水处理厂污泥，生活垃圾处理厂产生的残渣  （6）其他污染控制设施产生的垃圾、残余渣、污泥  （7）城市河道疏浚污泥  （8）不符合标准或规范的产品，继续用作原用途的除外  （9）假冒伪劣产品  （10）所有者或其代表声明是废物的物质或物品  （11）被污染的材料（如被多氯联苯PCBs污染的油）  （12）被法律禁止使用的任何材料、物质或物品  （13）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声明是固体废物的物质或物品  （二）固体废物不包括下列物质或物品：  （1）放射性废物  （2）不经过贮存而在现场直接返回到原生产过程或返回到其产生的过程的物质或物品  （3）任何用于其原始用途的物质和物品  （4）实验室用样品  （5）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批准其他可不按固体废物管理的物质或物品。    **三、固体废物与非固体废物鉴定**  （一）根据废物的作业方式和原因进行判断  根据表一所列作业方式和表二所列原因进行判断。如果一个物质、物品或材料必须以表一中列出的作业方式进行处理，并且满足表二中列出的一个或多个原因，可判断为固体废物。表一与表二必须结合使用，不能单独用于固体废物的鉴别。  **表一作业方式**   |  |  |  |  | | --- | --- | --- | --- | | 编号 | 贮存和处置作业 | 编号 | 利用作业 | | D1 | 置于地下或地上进行处置，例如填理 | R1 | 用作燃料，而不是直接焚烧，或以其他方式产生热能 | | D2 | 土地处理 | R2 | 有机物质的回收/再生 | | D3 | 深层灌注 | R3 | 金属和金属化合物的再循环/回收 | | D4 | 地表存放 | R4 | 其他无机物质的再循环/回收 | | D5 | 特别设计的填埋，如放置于加盖并且彼此分离、与环境隔绝的具有衬层的隔槽 | R5 | 酸或碱的再生 | | D6 | 排入水体，包括理入海床 | R6 | 用于消除污染的物质的回收 | | D7 | 焚烧，包括带有能量回收功能但以处置为目的的焚烧和水泥窑处置 | R7 | 催化剂组分的回收 | | D8 | 永久贮存，例如将容器置于矿井 | R8 | 用过的油的再提炼或者以其他方式进行重新使用 | | D9 | 在贮存和处置之前先加以混合、重新包装或暂时贮存 | R9 | 有助于改善农业或生态环境的土地处理 | | D10 | 产生需要进行贮存或处置的化合物或混和物的物理化学、生物处理 | R10 | 利用操作产生的残余物质的使用 | | D11 | 可暴露于自然环境中的产品的生产 | R11 | 以利用为目的进行的物质的交换和积累 | | D12 | 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声明或有关法律法规所规定的其他作为贮存或处置操作的作业方式 | R12 | 国务院经济综合宏观调控部门会同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声明或有关法律法规所规定的其他作为利用操作的作业方式 |   **表二废物必须进行综合利用或贮存和处置的原因/废物类别**   |  |  | | --- | --- | | 编号 | 原因(废物类别) | | Q1 | 生产或消费过程中产生的残余物 | | Q2 | 不符合质量标准或规范的产品 | | Q3 | 罚没的假冒伪劣产品 | | Q4 | 过期的产品或化学品 | | Q5 | 因溢出、遗失、或经历其他事故而被污染的材料 | | Q6 | 在使用中被污染的物质或物品 | | Q7 | 污染土地修复行动中产生的被污染的物质或物品 | | Q8 | 丧失原有功能的产品，如废催化剂 | | Q9 | 不再好用的物质或物品，如被污染的酸，被污染的溶剂 | | Q10 | 污染控制设施产生的垃圾、残余物、污泥 | | Q11 | 机械加工/抛光过程中产生的残渣 | | Q12 | 原材料加工产生的残渣 | | Q13 | 国务院经济综合宏观调控部门说明需要进行综合利用的或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说明必须进行处置的，以及国家有关法律法规所规定的必须进行综合利用或处置的其他原因 |   （二）根据特点和影响进行判断  评价一个物质、物品或材料（以下简称物质）是否属于固体废物，需要考虑以下因素：  （1）一般考虑。包括：该物质是否有意生产，是否为满足市场需求而制造，经济价值是否为负，是否属于正常的商业循环或使用链中的一部分。  （2）特征。包括：该物质的生产是否有质量控制，是否满足国家或国际承认的规范/标准。  （3）环境影响。包括：同初级产品相比，该物质的使用是否环境无害；同相应的原材料相比，在生产过程中，该物质的使用是否会对人体健康或环境增加风险；是否会对人体健康或环境产生更大的风险；该物质是否含有对环境有害的成分，而这些成分通常在所替代的原料或产品中没有发现这些成分在再循环过程中不能被有效利用或再利用。  （4）使用和归宿。包括：该物质使用前是否需要进一步加工；是否可直接在生产/商业上应用；是否仅仅需要很小的修复就可投入使用；是否仍然适合于其原始目的；是否可作为其他用途的替代物；是否实际应用在生产过程中；是否有固定的用途；是否可以其现有的形式或者不经过表一所列作业方式处理的形式得到利用；是否只有经过表一所列作业方式处理后才可以利用。  评价一个物质是否固体废物，需要综合考虑上述所有因素。根据不同的评估对象，需要重点考虑的因素有所不同。下列流程图可供进行固体废物与非固体废物鉴别时参考，但在具体应用时，应根据物质的特点和影响进行鉴别。 |